

정된 후에도 채권자의 반대의사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한 채무자는 동종, 동질의 다른 물건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른바 변경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(통설) - §581②[종류매매에서 매수인(채권자)의 완전물급부청구권]

3) 金錢채권

- a) 의의
 - └ 종류채무의 일종 - 일정액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
 - └ 특징 - 종류물이지만 특정의 문제가 없고, 금전 자체가 전부 멸실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없으므로 이행불능이 생기는 일도 없다.
- b) 발생원인: 매매, 임대차 등 그리고 채무불이행,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(§394, §763).
- c) 금전채권의 종류
 - └ 金額채권(원칙): 일정액의 금전(지폐, 주화)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(가분채권의 전형)
 - └ 金鐘채권: 일정한 종류의 통화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, 문제는 강제통용력을 잃은 경우→다른 통화로 변제(§376)
절대적 금종채권의 경우 → 종류채권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
 - └ 外貨채권
 - └ 외국금액채권(§377①) - 채무자가 통화종류 선택, 변제기에 강제통용력 잃은 때→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
 - └ 외국금종채권(§377②) - 변제기에 강제통용력 잃은 때→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
 - └ 채무자의 代用급부권(§378)
 - └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해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가능, 환가시기→이행기 아니라 이행시(지급할 때)
 - └ 인정이유: 채무자가 이행지에서 외국통화를 취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
 - └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도 인정: 공평의 관념상 채권자에게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(통설, 판례)
 - └ 換算시기
 - └ 채무자가 대용권을 행사한 경우 → 현실 지급 당시의 외환시세에 따라 환산하여 우리나라통화를 지급
 - └ 채권자가 대용권을 행사한 경우 →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하는 때를 기준으로 환산, 다만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실심변론 종결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
 - └ 特定금전채권: 특정의 금전(기념주화)을 급부로 하는 채권 → 특정물채권
- d) 금전채권의 특칙(금전채무불이행과 관련된)
 - aa)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관련한 특칙
 - ① 채권자는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였는가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. 이유는 이때는 언제나 일정금액의 손해(이행지 체시 지연이자)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(§397①), 그러나 손해의 주장은 필요(대판 2000. 2. 11, 99다49644).
 - ② 과실입증의 불필요: 금전채무자의 過失은 언제나 인정된다(§397②)
 - ③ 금전채권은 화폐제도가 존재하는 한 이행불능의 문제는 생기지 않으며, 다만 이행지체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.

bb) 금전채무불이행의 효과와 관련된 특칙

- ①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, 즉 변제기부터 현실지급시까지의 지연손해만이 문제 됨
- ② 지연배상은 이율로 정해지는데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한다. → 지연이자 또는 연체이자라고 함
법정이율은 年5分 (§379).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채무자에게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시 까지 연2할의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(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§3① 본문의 法定利律에 관한 규정)

4) 이자채권

a) 이자

- aa) 의의
- 금전 기타 대체물(원본)의 사용대가로, 그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(法定果實의 일종)
 - 不代替物인 토지, 기계, 건물의 사용대가인 지료, 차임은 이자가 아니고, 이행기 到來 후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와는 다르다
 - 이자 =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다 → 원본과 이자가 동종의 대체물일 필요는 없다.
 - 원본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.
 - 이자 = 일정기간을 단위로 원본 액에 대한 일정한 이율에 의해 산정된다.
- bb) 이율
- 법정이율 (§379)
 -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 (§425②, §548②, §587 후단, §600, §685, §688①, §748②).
 - 민사: 연 5푼
 - 상사: 연 6푼
 - 약정이율 -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발생
 - 이율산정은 주로 금전채무불이행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(§397①)으로 기능한다.

b) 이자채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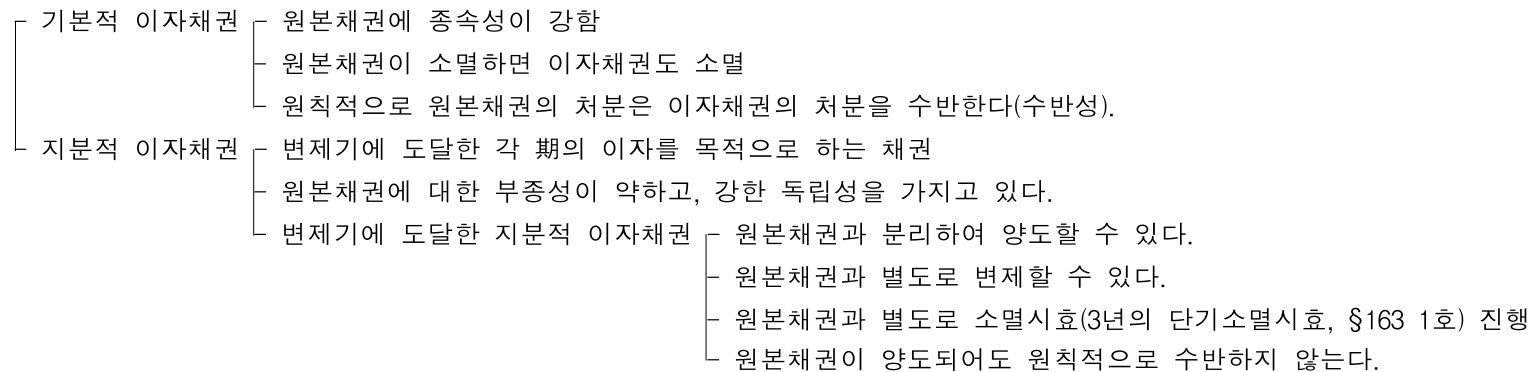
aa) 의의

- 이자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
- 이자 = 금전 기타의 대체물(원금 100만원에 대한 이자로 쌀 한가마니를 받기로 하는 경우)이므로 이자채권은 일종의 종류채권이며, 이자가 금전인 경우에는 금전채권의 적용을 받는다.
- 발생 - 당사자의 특약 또는 법률의 규정

bb) 이자채권은 성질상 基本的 이자채권과 支分的 이자채권으로 나뉨

- ① 의의
 -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의 채권이다.
 -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종속하며 그 운명(발생, 소멸)을 같이 한다(이자채권의 附從性).
- ※ 부종성: 법률적으로 어떤 권리의 성립, 존속, 태양(態樣), 소멸(消滅) 따위가 주된 권리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.

- ② 기본적·지분적 이자채권 - 100만원의 원금에 대하여 연 2할의 이율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, 여기서 연 2할의 이자지급 채무를 기본적 이자채무라 하고 변제기에 도래한 매월의 이자지급채무를 지분적 이자채무라고 한다.



cc) 이자의 제한

- 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(§8①·③)에 의한 제한
- ② 이자제한법(2007. 3. 29. 공포, 2007. 6. 30. 시행)에 의한 제한